

2023회계연도 재외동포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2024. 8.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 목 차 】

※ 2023회계연도 결산 검토의견 요약	①
-----------------------------	---

I.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1
------------------------------------	---

1. 세 입	1
--------------	---

2. 세 출	3
--------------	---

가. 개 요	3
--------------	---

나. 예비비	3
--------------	---

다. 전 용	4
--------------	---

라. 이 용	4
--------------	---

마. 수입대체경비	5
-----------------	---

바. 이 월	5
--------------	---

사. 불 용	6
--------------	---

II.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검토의견	7
---------------------------------	---

1. 개 요	7
--------------	---

2. 총 괄	8
--------------	---

3. 재외동포 지원	12
------------------	----

가. 개 요	12
--------------	----

나. 워킹홀리데이 이행(5033-301)	14
------------------------------	----

다. 재외동포 교류협력 강화(5035-301)	17
---------------------------------	----

라. 아주러시아동포 정책 강화(5038-302)	22
----------------------------------	----

4. 재외동포 행정지원	27
--------------------	----

가. 개 요	27
--------------	----

나. 재외공관 영사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7131-301)	28
5. 재외동포협력센터	31
가. 개 요	31
나. 수 입	31
다. 지 출	32
라. 검토의견	34
III. 재외동포청 통합 재무결산 분석	44
1. 총 괄	44
2. 재정상태표 분석	44
3. 재정운영표 분석	46
4. 순자산변동표 분석	49
IV. 재외동포청 성과관리 분석	51
1. 총 괄	51
2. 성과체계 현황	53
3. 2023회계연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56
V.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57
가. 재외동포와의 상생발전 기반구축	58
나. 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	60
VI.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검토의견	63

【2023회계연도 결산 검토의견 요약】

프로그램	세부사업	주 요 검 토 내 용
총괄		☐ 재외동포청 출범 준비 미흡에 사업지장 초래
재외동포 지원	워킹홀리데이 이행	☐ 워킹홀리데이 내·외국인 참가자 지원사업의 공개 입찰 심사기준 적정성 여부 및 직접 추진 가능성 검토 필요
	재외동포 교류협력 강화	☐ 국내외 동포단체 지원을 통하여 생성된 결과물에 대한 자료 보관 및 활용 방안 마련 ☐ 사할린동포지원사업의 통합 관리 필요
	아주러시아동포 정책 강화	☐ 사할린법 제정 기념사업 집행 부적정 ☐ 사할린법 제정 기념사업의 대한적십자사 위탁 운영 검토 필요
재외동포 행정지원	재외공관 영사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 재외국민등록제도 신뢰성 제고 방안 강구 필요
재외동포 협력센터	기록전시운영	☐ 재외동포 아카이브 시스템 조속 구축 및 외부기관과 연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외동포기록물 관리 필요
		☐ 자료실 미운영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축	☐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 지연에 따른 건립규모 축소의 재정당국과의 예산액 재논의 필요
예비비	재외동포와의 상생발전 기반구축 (재외동포청)	☐ 예비비 편성의 적정성 검토 부족
	인건비 (재외동포협력센터)	☐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미준수

I.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1. 세 입

< 세입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과 목	세 입 예산액 (A)	징 수 결정액 (B)	수납액 (C)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예산액과 수납액 차 (C-A)	예산액대 수납액 비율 (C/A)
경상이전수입	-	0.3	0.3	-	-	0.3	-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4.5	0.4	0.4	-	-	△4.1	8.9
합 계	4.5	0.7	0.7	-	-	△3.8	15.6

2023년도 재외동포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45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67만원으로 당초 세입 예산액 대비 383만원이 감소(15.6%)하였음.

수납액이 감소한 주요 사유는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인 면허료 및 수수료 수입이 당초 세입예산액 대비 410만원 미달하였기 때문임.

< 세입증감액조서 >

(단위: 백만원)

과 목	예산편성대비 증감액		증 감 사 유
	증	감	
12관 경상이전수입	0.3	-	청사 소방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
57항 변상금및위약금	0.3	-	
572목 위약금	0.3	-	
13관 재화및용역판매수입	-	4.1	수수료 수입액 감소
65항 면허료및수수료	-	4.1	
651목 면허료및수수료	-	4.1	
합 계	0.3	4.1	

2. 세 출

가. 개 요

< 세출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집행액 (C)	집행율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C/A)	(C/B)		
-	56,133	42,129	-	75.1	3,241	10,764

※ 재외동포청은 '23.6.5. 출범 시, 외교부로부터 예산을 이체받았기에 예산액(A) 없음.

※ 예산현액(56,133백만원) = 외교부 잔여예산 이체(34,136백만원) + 예비비(21,997백만원)

2023년도 재외동포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561억 3,300만원이며, 이 중 421억 2,900만원을 집행(75.1%)하였고, 32억 4,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07억 6,4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나. 예비비

(단위: 백만원)

과 목	배정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일반예비비	21,997	15,534	1,565	4,898
- 일반예비비	21,997	15,534	1,565	4,898

2023년도 예비비는 재외동포청 출범('23. 6. 5)에 따른 기관 운영비 및 「재외동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신설된 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금 등을 위한 예비비로 총 219억 9,700만원이 배정되었으며, 이 중 155억 3,400만원을 집행(70.6%)하였고, 15억 6,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8억 9,8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다. 전 용

<전용 개요>

(단위: 백만원)

유 형 별	전 용 사 유	금 액
사업계획 변경	재외동포 영사서비스 지원 비목조정	-
	재외동포협력센터 비목조정	-
	글로벌 인재양성 비목조정	-
	재외동포 권익향상 비목조정	38
	세대별 분야별 재외동포 협력지원 비목조정	425
	동포 언론 활성화 지원 비목조정	-
	지역별 재외동포 정책 강화 비목조정	453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량 증가	재외동포 행정지원 비목조정	429
합 계		1,345

2023년도 전용액은 총 13억 4,500만원으로, 지역별 재외동포 정책 강화 비목조정 4억 5,300만원, 재외동포 행정지원 비목조정 4억 2,900만원, 세대별 분야별 재외동포 협력지원 비목조정 4억 2,500만원, 재외동포 권익향상 비목조정 3,800만원이 전용되었음.

라. 이 용

해당사항 없음.

마. 수입대체경비

해당사항 없음.

바. 이 월

< 이월 개요 >

(단위 : 백만원)

유 형 별	이월사유	금 액
미지급금 이월	민간위탁사업 및 일반용역 미지급금 발생	566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구축 HW 계약금 이월	671
	연구용역 미완료로 인한 이월 등	387
	소 계	1,624
사업계획 변경	청 출범에 따른 사무환경 조성 공사 사업계획 변경 등	1,397
	소 계	1,397
기타	국가재정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기본경비 이월	220
	소 계	220
합 계		3,241

2023년도 이월 규모는 32억 4,100만원으로, 청 출범에 따른 사무환경 조성 공사 사업계획 변경 등(13억 9,700만원)이 주요 사유임.

사. 불 용

< 불용 개요 >

(단위: 백만원)

유 형 별	불 용 사 유	금 액
지급사유 미발생	기본경비 지급사유 미발생	38
	주요사업 지급사유 미발생	42
	소 계	80
집행잔액	집행잔액 등	10,684
	소 계	10,684
합 계		10,764

2023회계연도 불용액은 총 107억 6,400만원으로, 지급사유 미발생 8,000만원, 집행잔액 등으로 106억 8,4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음.

Ⅱ.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검토의견

1. 개 요

「정부조직법」 개정¹⁾에 따라 2023년 6월 5일 재외동포재단이 해산²⁾되고 재외동포청이 출범하였음. 재외동포청 출범에 따라 재외동포재단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은 재외동포청이 승계하였고 외교부 소관 중 재외동포영사 서비스 및 재외동포권익향상 등 재외동포와 관련된 일체의 사업은 재외동포청으로 이관되었음.

2023회계연도 재외동포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사업구조를 보면, 재외동포 지원 및 재외동포 행정지원 등 2개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교부에서 이체된 341억 3,600만원 및 예비비 219억 9,700만원 등 예산현액은 561억 3,300만원이고 이 중 421억 2,900만원을 집행하였고 32억 4,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07억 6,400만원을 불용하였음.

< 재외동포청 프로그램별 결산내역 >

(단위 : 백만원, %)

프로그램	2022 결산	2023년					2024 예산
		외교부 이체액	예비비	예산현액 (A)	결산 (B)	집행률 (B/A)	
계	-	34,136	21,997	56,133	42,129	75.1	106,660
[5000] 재외동포 지원	-	26,226	4,752	30,978	24,515	79.1	73,965
[7100] 재외동포 행정지원	-	7,910	17,245	25,155	17,615	70.0	32,695

1) 2023. 2. 27. 국회 의결, 재외동포청 신설 및 「재외동포재단법」 폐지

2) 재외동포재단 설립 및 해산: 1997. 10. ~ 2023. 6.

2. 총 괄

□ 재외동포청 출범 준비 미흡에 따른 사업지장 초래

재외동포청 출범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700만명의 재외동포의 염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동포들의 기대감이 매우 큰 만큼 출범 당시 준비를 철저히 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었음.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재외동포청 출범 추진 현황 >

일자별	추진내역
2023. 2. 27.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3. 4. 21.	재외동포청 설립기획단 발족
2023. 4. 27.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 국회 통과
2023. 6. 5.	재외동포청 출범 ※ 재외동포재단 해산, 재외동포협력센터 설립(「재외동포기본법」 근거)
2023. 6. 7.	기재부 예비비(21,997백만원) 이체 승인 통보
2023. 8. 3.	기재부 외교부 예산(34,136백만원) 이체 승인 통보
2023. 9.	경력경쟁채용 공무원 신규 임용(61명) ※ 2024. 4월 기준: 현원 137명(정원 151명)

그러나 외교부는 재외동포청 출범을 준비하면서 재외동포재단에서 시행 중이거나 시행을 준비하고 있던 일부 사업을 중단하고 재외동포청 출범 이후 사업을 개시하도록 하였으며³⁾, 재외동포청 출범 초기에 인력 부족과 시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거나 추진되지 않았고 한국어뉴스 세계위성방송망사업은 재외동포청이 재검토하여 폐지한 후 2024년부터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사업으로 변경시행하였음.

3) 2023년 5월 재외동포재단 관계자의 사업추진 저조에 대한 답변

< 재외동포청 출범에 따른 사업 추진 현황 >

내역사업명	추진 현황		비 고
	사업 수행 계획안	추진 현황	
사할린동포 지원	‘사할린동포 2-3세 모국방문 사업’	○ ‘사할린동포 2-3세 모국방문 사업’ 추진 불가	○ 재외동포청 출범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간적 제약과 계절적·환경적 요인으로 추진 불가
한글학교교사 초청연수	○ 사업 계획: 2023년 7월	○ 사업 추진 : 2024년 1월	○ 재외동포청 개청으로 사업 지연 ○ 한글학교 지역별 협의회를 대상으로 연수 시행 시기 관련 의견을 수렴하여 24년 1월 중 추진
조사연구 활성화 사업	연구용역,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추진	○ 연구용역 2건 ○ 이해교육 3건 추진 완료 - 이해교육 일부 미추진	○ 개청 및 23.9월 업무 이관 후 각 학교 커리큘럼과의 일정 조율 문제 등
재외동포 차세대대회	○ 세계한인차세대대회 - 사업 계획: 9월	○ 세계한인차세대대회 - 사업 추진: 11월	○ 재외동포청 출범에 따른 사업 지연
한상활용 청년 해외진출 지원	○ 한상활용 청년 해외진출 지원 - 인턴 출국: 7~9월 - 인턴 및 기업 사후 관리: 7~ ‘24.3월	○ 한상활용 청년 해외진출 지원 - 인턴 출국: 12~ ‘24.2월 - 인턴 및 기업 사후 관리: 12~ ‘24.8월	○ 재외동포청 출범에 따른 사업 지연
한국어뉴스 세계위성방송망 구축	○ 한국어뉴스 세계위성방송망 구축 - YTN과 협약 체결	○ 사업 폐지	○ 기존 ‘한국어뉴스 세계위성방송망 구축사업’에 대한 재검토 결과 폐지 ○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사업으로 변경
입양동포 실태조사	‘입양동포 실태조사’ 연구용역 실시	○ 현지 간담회를 통한 입양동포 현안파악 - 미국(11월)·네덜란드(12월) 간담회 개최 완료	○ 연구비 집행 축소(전용) - 일부 일반연구비(50백만원)는 ‘원폭 피해동포 초청사업’의 예산 부족분 충당을 위해 일반용역비로 전용
동포보듬기 사업	신규사업	○ 원폭 피해동포 초청사업 - 23.9월 원폭 피해 동포를 초청하여 대통령 오찬, 건강검진, 문화 시찰, 동포청장 만찬 행사 개최	○ 개청 계기 상징적 사업 신규 추진 - 재외동포청 개청에 따라 역사적 특수동포 및 소외된 취약 동포를 국내로 초청 - 재외동포와 모국과의 유대감 강화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라 신설된 재외동포협력센터도 출범 직후 사업비 예산 배정 과정에서 외교부-재외동포청-재외동포협력센터 간 사업조정 협의, 기획재정부와 재외동포청 간 사업조정 협의 및 승인, 관련 예산 배정을 위한 재외동포청 계좌개설 및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출연금 교부 등 전반적인 절차가 지연되면서 지장을 초래하였음.

< 재외동포협력센터 사업 추진 현황 >

단위사업	사업명	추진 현황	비고
통합네트워크 지원	재외동포 통합네트워크 지원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6·7월 대금(9.11. 지급)	○예산 미배정으로 6·7월 대금 지연
동포지원사업	한상넷 운영	유지관리 5~7월 대금(9. 8. 지급)	○예산 미배정으로 5월~7월 대금 지연
기록전시운영	자료실 운영	자료실 미운영	○온·오프라인 서비스 운영 중단 및 도서 구입 중지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축	설계용역 지연(2023. 1.25 - 2023. 9. 21. → 2024. 4.29)	○사업이관 및 행정 소요기관 반영
재외동포 장학사업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	7월 장학금(8.24. 지급) 8월 장학금(9. 5. 지급)	○예산 미배정으로 7·8월분 대금 지급 지연
		2023년 장학생 선발지연으로 인한 생활비, 어학연수비 등 4억원 불용	○당초 9월 선발 예정이었으나, 12월 선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재단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재단이 행한 행위는 재외동포청의 행위로 보도록 규정⁴⁾하고 있으므로 외교부는 재외동포재단으로 하여금 업무의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재외동포청 출범시 인력 문제 및 시간적 제약

4) 「정부조직법」 부칙<법률 제19228호, 2023. 3. 4>

제3조(다른 법률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 재외동포재단(이하 이 조에서 “재단”이라 한다)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재단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은 재외동포청이 승계한다. 이 경우 재외동포청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승계되는 날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재단에 대한 행위는 그 업무의 범위에서 재외동포청의 행위 또는 재외동포청에 대한 행위로 본다.

등으로 재외동포 지원업무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었음.

또한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에 따라 부칙으로 외교부장관은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설립을 위한 위원을 위촉하는 등 법 시행 전 센터 설립준비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외교부-재외동포청 간 사업조정 협의 및 예산 배정 지연 등으로 출범 준비과정이 미흡하였던 것으로 보임.

3. 재외동포 지원

가. 개 요

“재외동포 지원” 프로그램은 지역별·분야별·세대별 맞춤형 동포지원 및 재외동포사회와의 교류증진을 통해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으로 7개의 단위사업과 1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2023년도 예산액은 309억 7,800만원 중 245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음.

< 재외동포 지원 프로그램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프로 그램	단위 사업	세부사업	예·결산				
			2022 결산	2023			2024 예산
				예산		결산(B)	
				본예산	추경(A)		
[5000] 재외동포 지원			-	-	-	24,515	73,965
	[5031]	재외동포 영사서비스 지원	-	-	-	830	3,065
		[301] 재외동포 영사서비스 지원	-	-	-	830	906
		[302]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운영	-	-	-	-	2,159
	[5032]	재외동포협력센터	-	-	-	13,165	23,754
		[302] 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	-	-	-	13,165	23,754
	[5033]	글로벌 인재양성	-	-	-	295	922
		[301] 워킹홀리데이 이행	-	-	-	295	665
		[302] 재외동포 청년인턴 사업	-	-	-	-	257
	[5034]	재외동포 권익향상	-	-	-	666	1,410
		[301] 재외동포사회와의 파트너십 사업	-	-	-	339	728
		[302] 재외동포와의 상생발전 기반구축	-	-	-	327	682
	[5035]	세대별 분야별 재외동포 협력지원	-	-	-	7,655	33,105
		[301] 재외동포 교류협력 강화	-	-	-	2,679	7,100
		[302] 재외동포 교육문화 지원	-	-	-	1,808	22,194

프로 그램	단위 사업	세부사업	예·결산				
			2022 결산	2023			2024 예산
				예산		결산(B)	
				본예산	추경(A)		
		[303] 재외동포 차세대 및 인권지원	-	-	-	1,398	1,353
		[304] 재외동포 경제인 네트워크 활성화	-	-	-	1,770	2,458
	[5036]	동포 언론 활성화 지원	-	-	-	420	1,687
		[301] 재외동포정책기반 조성	-	-	-	420	1,687
	[5038]	지역별 재외동포 정책 강화	-	-	-	1,484	10,022
		[301] 미주유럽동포 정책 강화	-	-	-	384	820
		[302] 아주러시아동포 정책 강화	-	-	-	1,100	9,202

나. 워킹홀리데이 이행(5033-301)

“워킹홀리데이 이행” 사업은 워킹홀리데이에 관심이 있는 우리 국민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설명회, 간담회, 워크숍 개최를 통해 현지 생활, 안전, 일자리 정보, 체류 관련 상담 등을 제공하여 참가자에게 안전한 참가를 지원하는 사업임.

< 워킹홀리데이 이행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

예산액 (A)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C/B)
	전년 이월	이·전용 등	예비비					
-	-	299	-	299	295	-	4	98.7

외교부에서 이체된 예산현액은 2억 9,900만원으로 이 중 2억 9,500만원이 집행되고 400만원이 불용되었음.

☐ 워킹홀리데이 내·외국인 참가자 지원사업의 공개입찰 심사기준 적정성 여부 및 직접 추진 가능성 검토 필요

‘워킹홀리데이 내·외국인 참가자 지원 사업’은 워킹홀리데이 참가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 참가를 유도하고 한국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외국인 참가자 증대 등을 목표로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는 사업임.

동 사업은 2010년부터 워킹홀리데이 협정체결국 확대와 함께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내·외국인 참가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 일반용역비 4억 5,000만원 중 4억 4,880만원을 집행하였음.

< 워킹홀리데이 내·외국인 참가자 지원 현황 >

지원대상	지원 내역
우리국민 참가자	- 워킹홀리데이 국내 설명회, 해외통신원·워홀프렌즈 운영 및 콘텐츠 공모전 등 - 관련 상담 및 협정 체결국 워킹홀리데이 안내서 제작 및 배포
외국인 참가자	- 한국내 일자리, 관광, 숙박, 어학연수 정보의 발굴 및 업데이트 - 한국 문화체험 행사, 한국 워킹홀리데이 홍보물 제작·배포 및 홍보

동 사업은 사업의 전문성 유지 및 홈페이지 운영 등을 위하여 공개입찰을 통하여 낙찰된 민간 위탁사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나, 2014년부터 10년 동안 (주)대학내일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3년은 4억 4,88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음.⁵⁾

< 연도별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내·외국인 참가자 지원 계약 체결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액	계약금액	수행업체	연도	예산액	계약금액	수행업체
2014	441	418	(주)대학내일	2019	450	440	(주)대학내일
2015	441	425	(주)대학내일	2020	450	440	(주)대학내일
2016	441	424	(주)대학내일	2021	450	446	(주)대학내일
2017	450	429	(주)대학내일	2022	450	449	(주)대학내일
2018	450	440	(주)대학내일	2023	450	449	(주)대학내일

5) 2024년에도 (주)대학내일과 계약을 체결하였음.

민간위탁제도는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기는 것으로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음.

그러나 동 사업의 입찰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중 업체평가부분을 보면, 만점(100점) 중 유사사업수행실적에 5점(5%)을 배점하고 있음. 유사사업수행실적이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내국인 연수 참가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제작/관리 업무, 국내외 대학생 대상 홍보 사업, 사업 홍보를 위한 서포터즈 운영 대행 실적과 관련된 개별 용역수행 실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유사사업수행실적은 업체선정에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나, 기존업체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다른 업체의 낙찰가능성을 차단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향후 공개입찰 시 유사사업수행실적 심사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재외동포청은 기관의 업무추진과정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고 있는데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운영이 계속사업으로서 사업 추진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재외동포청에서 직접 추진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다. 재외동포 교류협력 강화(5035-301)

“재외동포 교류협력 강화”는 재외동포사회 각계의 한인네트워크 연결 및 대한민국과의 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지구촌 한인 공동체를 구축하는 사업임.

<재외동포 교류협력 강화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예산액 (A)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C/B)
	전년 이월	이·전용 등	예비비					
-	-	5,895	-	5,895	2,679	89	3,126	45.4

외교부에서 이체 및 이·전용된 예산현액은 58억 9,500만원으로 이 중 집행액은 26억 7,900만원이고 이월액은 8,900만원이며, 31억 2,600만원을 불용하였음.

□ 국내외 동포단체 지원을 통하여 생성된 결과물에 대한 자료 보관 및 활용 방안 마련

‘재외동포 교류협력 강화’는 동포단체 활성화, 조사연구활동지원, 재외동포 공공외교 활동 지원, 한인회관 등 건립지원, K-타운 활성화 지원 등 국내외 동포단체(한인회, 차세대, 경제, 문화, 언론 등 관련 단체)가 시행하는 동포사회 발전, 재외동포 정책 이행, 각종 계기성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특히 조사연구활동지원은 국내외 재외동포 연구단체의 동포사회 실태조사 등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기록·보관 사업을 실시하고 동포사회 현안 연

구 및 논의를 위한 학술회의 개최 등 계기성 프로젝트를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국내외 동포단체 지원사업은 매년 500여개 단체에 50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으나, 동포단체에서 시행한 사업결과물 중 전자결과물은 온나라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비전자결과물은 온나라시스템에 건명을 등록한 후 별도로 서류함에 보관하고 있어 관련 결과물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2023년 동포단체 지원 내역 >

연도	지원 내역
2023	○ 교류증진 권익신장 지원: 89개국, 352개 단체, 449개 사업 ○ 문화예술단체 지원: 18개국, 105개 단체, 105개 사업 ○ 차세대단체 지원: 14개국, 39개 단체, 45개 사업 ○ 경제단체 지원: 15개국, 21개 단체, 21개 사업 ○ 계기성 기념사업 등 지원: 2개국, 2개 단체, 2개 사업 ○ 재외동포 언론단체 지원: 6개 단체, 6개 사업 ○ 국내 동포관련 단체활동 지원: 23개 단체, 23개 사업 ○ 조사연구활동 지원: 8개 단체, 10개 사업 ○ 재외동포 공공외교 활동지원: 147개 단체, 169개 사업

2023년 동포단체 지원사업은 한-핀 수교 50주년 기념 교민을 위한 행사, 미주한인 이민 120주년 기념행사, 반아시안 혐오범죄관련 연구사업, 옥스퍼드 한인사회 차세대 학술교류사업, 인도 한인 70년사 역사편찬,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기념사업 등 500여개의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였음.

이러한 해외이주 계기성 기념사업, 종합 문화행사, 자료집 발간 등은 재외동포 거주국의 현지 특성과 세대 및 연령 등 다양한 여건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결과물을 활용한 재외동포의 민족정체성 제고, 대한민국 국민과 교

류활동 및 유대강화 등 재외동포정책 수립 및 재외동포 관련 조사 및 연구를 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재외동포협력센터는 도서, 논문, 신문, 전자문서 등 전문자료를 수집·관리 및 대국민서비스를 위하여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설립에 맞추어 재외동포 아카이브 구축을 추진 중에 있음을 고려할 때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협력센터와 협의하여 각종 동포단체 지원사업에서 생성된 결과물 중 재외동포사회의 이해 제고, 현안 및 이슈 파악, 재외동포 연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외동포 관련 기록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할린동포지원사업의 통합 관리 필요

‘재외동포 교류협력 강화’ 세부사업(5035-301) 중 ‘동포단체활성화’ 내역 사업에서 사망한 사할린 동포 1세 자녀의 모국방문 지원사업과 사할린 동포 위문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사할린동포 관련 사업은 1989년 한·일간 체결한 ‘사할린 거주 한국인 지원 공동사업체 협정’에 따라 대한적십자사가 시행하고 있으며, 구) 재외동포재단이 1997년 외교부로부터 이관받아 실시하던 사업을 2023년 6월 재외동포청이 설립되면서 이어받아 실시하고 있으며, 주관부서는 재외동포협력총괄과임.

한편 ‘아주러시아동포 정책 강화’ 세부사업(5038-302)에서도 외교부로 이

관받은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사업과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할린동포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관부서는 아주러시아동포과임.

< 사할린동포 지원사업 비교 >

세사업명	재외동포 교류협력강화(5035-301)	아주러시아동포 정책강화(5038-302)
담당부서	재외동포협력총괄과	아주러시아동포과
사업명	사할린동포 2세 모국방문사업	사할린 한인 2-3세 모국방문사업
대상	사할린동포 2세 (사할린동포 1세가 사망하여 모국에 방문하지 못한 경우)	사할린동포 2-3세 (사할린동포 1세의 영주귀국한 경우)
수탁기관	대한적십자사	입찰을 통한 사업자 선정*
시작년도	1997년	2017년
2023년 예산	1억 2,000만원	4억원
그 밖의 사업	국내 체류 동포 위문품 지원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기념사업

* 2017~2020년에는 대한적십자사가 수행하였음.

2023년 재외동포청이 출범하면서 외교부 및 재외동포재단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던 사할린동포 관련사업을 재외동포청이 이관받았음. 그러나 사할린동포를 지원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유사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세사업을 분리하여 각각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업무의 비효율 및 행정비용이 낭비될 우려가 있음.

2023년 재외동포협력총괄과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사업을 변경하여 사할린동포 신규 영주귀국자 2세를 위한 한국문화체험을 시행하였으나, 아주러시아동포과는 재외동포청 개청에 따른 준비시간 부족으로 사업을 미실시하여 주관부서에 따라 사업이 달리 운영되고 있음. 2024년 예산에도 세사업을

분리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

재외동포청 출범당시 조직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체계적으로 편성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보이는 바, 사할린동포 지원사업 예산을 일원화함으로써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라. 아주러시아동포 정책 강화(5038-302)

“아주러시아동포 정책 강화”는 아주·러시아·CIS·아프리카·중동 지역 재외동포단체 사업지원 및 실태조사, 현안연구, 동포간담회 등을 추진하여 재외동포정책을 수립·시행하는 사업임.

< 아주러시아동포 정책 강화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A)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C/B)
	전년 이월	이·전용 등	예비비					
-	-	2,156	-	2,156	1,100	300	756	51.0

외교부에서 이체 및 이·전용된 예산현액은 21억 5,600만원으로 이 중 집행액은 11억원이고 이월액은 3억원이며, 7억 5,600만원을 불용하였음.

주요 불용사유는 해외현지 사정으로 동포단체의 사업 미신청, 사업 연기, 환률하락으로 인한 외화 송금 잔액 등임.

□ 사할린법 제정 기념사업 집행 부적정

사할린동포 지원사업은 사할린 거주 한인 2-3세 모국 방문사업과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기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3년 외교부에서 이체된 모국방문사업 및 기념사업 예산액은 각각 4억원,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3년 사할린 사업 관련 예산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예산사업명	예산액	이전용액	예산현액	집행액
가. 사할린 사업 지원	550	△96	454	300
1) 사할린 거주 한인 2~3세 모국 방문 사업	400	△96	304	-
2)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기념사업	150	-	150	300

사할린 한인 거주 2~3세 모국방문사업은 재외동포청 개청에 따른 준비시간 부족으로 실시하지 못하였고 사할린법 제정 기념사업은 TV방송 프로그램 4편을 제작·방영하면서 2023년 예산액보다 1억 5,000만원이 많은 3억원을 이월·집행하였음.

재외동포청은 청 개청 및 사할린동포법 개정 계기 동포정책을 홍보하고 우리 국민의 동포 관련 인식제고를 위하여 사할린법 제정 기념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기념사업은 동 법 제3조⁶⁾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명예 회복에 필요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2021년 동 법 제정 이후 매년 1억 5,000만원을 예산액으로 편성하였으나, 2024년에는 오히려 5,000만원이 감액된 1억원을 편성하여 사업이 축소되었음.

2021년에는 사할린동포법 제정 및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를 모시고 정동아트센터에서 기념식을 진행하였으나, 2022년 및 2023년에는 기념사업으로

6)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사할린동포에 대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사할린동포에 대한 피해구제, 유해 발굴 및 봉환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할린동포의 명예 회복에 필요한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였는데 2022년에는 2편을 제작하였고 2023년에는 2편이 증가한 4편을 제작하였음.

재외동포청 출범 기념으로 당초 편성된 예산액을 증액하여 방송프로그램 제작 편수를 증가시킨 것은 동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념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홍보성 사업을 구체적 계획없이 물량 증가를 통하여 일시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사할린법 제정 기념사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프로그램명	방영일	주요내용	분량	시청률	집행액
KBS 동네 한 바퀴	'24.1.6.	사할린동포 위문품 증정식, 사할린동포 2세 한국문화체험 등	13분	4.4	45
KBS 이웃집 찰스	'24.2.6.	부산 기장편	50분	4.4	45
KBS 한국인의 밥상	'24.2.8.	국내거주 사할린동포 4세편	50분	5.6	60
SBS 모닝와이드	'24.1.3.	설특집 사할린동포편	55분	2.0	150
계					300

* 2022년에는 무엇이든 물어보살, 한국인의 밥상 등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특히 사할린동포지원 내역사업 내 사할린 한인 거주 2-3세 모국방문사업이 재외동포청 개청에 따른 준비시간 부족으로 실시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한 모국방문사업 불용액 4억원 중 1억 5,000만원을 기념사업 예산으로 집행한 것은 사할린동포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는 하나, 모국방문지원과 방송프로그램 제작이라는 예산사업의 성격이 엄연하게 차이가 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임.

향후 재외동포청은 사업 수행이 불가할 경우 가급적 불용처리하여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었고 특별한 사유로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내역변경절차를 통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었음.

□ 사할린법 제정 기념사업의 대한적십자사 위탁 운영 검토 필요

사할린동포 지원사업은 사할린 거주 한인 2-3세 모국 방문사업과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기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2023년 예산과목은 민간위탁사업비(320-02)로 편성되어 집행이 이루어졌음.

사할린법 제정 기념사업은 2021년에 사할린법 제정 원년을 기념하여 영주귀국 기념식, 사할린동포의 역사 및 지원활동 관련 전시회, 사할린동포 관련 영상콘텐츠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2년 및 2023년은 언론진흥재단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였음.

< 연도별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기념사업 계약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계약명	예산액	집행액	계약기간	수탁기관
2021	사할린 동포법 제정 기념사업 시행	150	143	21.5-22.1	주식회사 메가온
2022	사할린 기념사업 방송 프로그램	150	150	22.11-22.12	언론진흥재단
2023	사할린 기념사업 방송 프로그램	150	300		언론진흥재단

민간위탁사업비는 개별법령에 따라 국가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민간위탁하는 경우 제반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할린동포 지

원사업의 경우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업무의 위탁)⁷⁾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무를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하고 있음.

대한적십자사는 사할린법이 제정되기 이전 1989년부터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사업을 시작하여 우리 정부가 위탁한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사업, 2-3세 모국방문 사업, 인천 사할린 복지회관 운영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의 예산으로 러시아 현지 사할린동포 1세대의 일시모국방문 및 영주귀국자 역방문을 추진하고 있음.

이와 같이 대한적십자사는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부터 사할린동포의 복지업무 등 국내 및 사할린에 거주하고 있는 사할린동포의 전반적인 사항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한적십자사 내에 사할린동포지원을 위한 사할린동포지원본부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전문기관임.

2022년 및 2023년 사할린기념사업은 언론진흥재단을 통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그쳐 사할린동포의 명예회복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 바, 전문기관인 대한적십자사와 협의하여 동 사무를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사업의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7)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업무의 위탁) 재외동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의 접수 업무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한다.

4. 재외동포 행정지원

가. 개 요

“재외동포 행정지원” 프로그램은 제도개선 및 민원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통해 재외동포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4개의 단위사업과 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2023년도 예산액은 251억 5,500만원 중 176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음.

< 재외동포 행정지원 프로그램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프로 그램	단위 사업	세부사업	예·결산				
			2022 결산	2023			2024 예산
				예산		결산(B)	
				본예산	추경(A)		
[7100] 재외동포 행정지원			-	-	-	17,615	32,695
	[7101]	인건비	-	-	-	3,059	12,721
		[101] 인건비	-	-	-	3,059	12,721
	[7111]	기본경비	-	-	-	1,582	5,683
		[201] 기본경비(총액)	-	-	-	330	1,327
		[251] 기본경비	-	-	-	1,252	4,356
	[7112]	사무환경 조성	-	-	-	5,459	-
		[251] 사무환경 조성	-	-	-	5,459	-
	[7121]	행정효율성 증진 및 역량 강화	-	-	-	-	300
		[301] 행정효율성 증진 및 역량 강화	-	-	-	-	300
	[7131]	재외동포 정보화	-	-	-	7,514	13,991
		[301] 재외공관 영사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	-	-	2,501	4,703
		[302]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 구축(정보화)	-	-	-	3,687	6,954
		[303]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	-	-	1,326	2,334

나. 재외공관 영사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7131-301)

“재외공관 영사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사업은 재외국민의 영사, 민원, 보호업무 및 행정서비스를 제고하여 재외동포가 재외공관 방문 없이 안전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영사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함.

<재외공관 영사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예산액 (A)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C/B)
	전년 이월	이·전용 등	예비비					
-	-	2,597	-	2,597	2,501	-	96	96.3

외교부에서 이체된 예산현액은 25억 9,700만원으로 이 중 집행액은 25억 100만원이고 9,600만원을 불용하였음.

주요 불용사유는 영사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낙찰차액과 해외 SMS 발송 비용 및 전용선 사용료 집행잔액임.

□ 재외국민등록제도 신뢰성 제고 방안 강구 필요

「재외국민등록법」은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하여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 편의 증진 및 재외국민 보호정책 수립을 위한 법률로서 2023년 재외동포청이 출범함에 따라 외교부로 이관받아 재외동포청이 관장하고 있음.

동 법에 따르면 재외국민이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

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경우 재외국민으로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재외국민등록제도는 1949년에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주 또는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 수와 재외국민등록자 수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음. 전체 추정 재외국민 수는 2,467,969명으로 이중 재외국민등록자 수는 68.6%인 1,693,115명으로 저조함. 대부분의 공관에서 재외국민등록률이 추정 재외국민 수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등록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등록률의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남.

< 공관별 재외국민 등록률 현황(2023.12월 기준) >

재외국민등록 초과등록률 상위 15개 공관				재외국민등록 미달등록률 상위 15개 공관			
공관명	추정 재외국민 수 (A)	등록 재외국민		공관명	추정 재외국민 수 (A)	등록 재외국민	
		등록자 수(B)	등록률 (B/A)			등록자 수(B)	등록률 (B/A)
주에멘(대)	2	165	8250.0	주시애틀(총)	69,726	23,115	33.1
주아프가니스탄(대)	6	185	3083.3	주베트남(대)	76,200	23,815	31.2
주리비아(대)	23	666	2895.6	주바르셀로나(총)	1,226	294	23.9
주우크라이나(대)	75	822	1096.0	주휴스턴(총)	58,423	13,930	23.8
주수단(대)	26	232	892.3	주호놀룰루(총)	32,791	5,891	17.9
주투르크메니스탄(대)	28	222	792.8	주시카고(총)	136,046	24,170	17.7
주이란(대)	150	1,013	675.3	주샌프란시스코(총)	160,640	26,304	16.3
주스리랑카(대)	440	2,894	657.7	주멜번(분)	12,820	1,972	15.3
주적도기니(대)	59	277	469.4	주애틀랜타(총)	147,961	20,933	14.1
주오만(대)	241	1,129	468.4	주댈러스(출)	42,364	5,154	12.1
주벨라루스(대)	54	251	464.8	주세부(분)	8,663	955	11.0
주카자흐스탄(대)	250	1,072	428.8	주발리(분)	640	39	6.0
주알제리(대)	403	1,725	428.0	주다낭(총)	12,357	200	1.6
주아제르바이잔(대)	156	666	426.9	주브리즈번(출)	17,650	144	0.8
주요르단(대)	345	1,433	415.3	주필라델피아(출)	32,463	233	0.7
총 계					2,467,969	1,693,115	68.6

* 재외국민등록률 초과 상위 공관 15개, 저조 공관 15개

특히 예멘,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우크라이나 등의 국가는 추정 재외국민의 1,000% 이상의 재외국민등록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와 같이 재외국민등록률이 추정 재외국민 수를 초과하는 경우는 이동·귀국·사망·외국국적 취득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고를 해태하는 경우임.

이러한 부정확한 재외국민등록 실태는 정부가 해외체류중인 국민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없게 하고 재난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재외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음. 2024년도 재외동포청 예산에 재외국민등록제도 개선을 위한 직접적인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음.

재외국민등록제도는 정부가 해외 체류 중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해외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의 등록률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하여 재외국민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재외국민등록제도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5. 재외동포협력센터

가. 개 요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초청·연수·교육·문화·홍보 사업, 재외동포 이주 역사에 대한 조사·전시 사업 등 재외동포의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및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재외동포기본법」 8)에 따라 설립⁹⁾된 재외동포청 산하의 정부출연기관임.

나. 수 입

2023년도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수입은 정부출연금 85억 3,600만원, 예비비 46억 2,900만원, 자체수입 1,400만원을 합쳐서 총 131억 7,900만원임.¹⁰⁾

정부출연금은 구) 재외동포재단의 사업 중 재외동포청으로 이관받은 통합네트워크 지원, 기록전시운영, 동포지원사업,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

8) 「재외동포기본법」

제11조(재외동포협력센터의 설립 등)① 국가는 재외동포의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및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재외동포협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센터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초청·연수·교육·문화·홍보 사업
2. 재외동포 이주 역사에 대한 조사·전시 사업
3. 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그 밖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센터장과 필요한 임직원을 둔다.

⑤ 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립,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⑦ 센터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외동포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법령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하여 사용할 수 있다.

9) 「재외동포기본법」 공포(2023. 5. 9.)에 따라 2023년 6월 5일 재외동포협력센터 설립

10) 2023년 수입예산은 재외동포협력센터 설립일인 2023년 6월 5일을 기준으로 함.

민족교육 육성, 재외동포 장학사업, 차세대육성사업 등을 위한 예산액이고 인건비¹¹⁾ 및 경상운영비는 예비비를 편성하였음.

< 재외동포협력센터 수입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당초예산	증 감	예산현액(A)	결 산(B)	차 액(B-A)	집행률(B/A)
총 계	-	-	13,165	13,179	14	100.1
1. 일반회계	-	-	13,165	13,165	-	100.0
- 정부출연금	-	-	8,536	8,536	-	100.0
- 예비비	-	-	4,629	4,629	-	100.0
2. 자체수입	-	-	-	14*	14	-
- 이자수입	-	-	-	4	4	-
- 잡수익	-	-	-	10	10	-

* 자체수입 예산 미편성에 따라 전액 반납

다. 지 출

2023년도 지출내역을 보면, 편성된 예산은 인건비 31억 8,100만원, 경상운영비 16억 4,900만원, 사업비 83억 3,500만원으로, 총 131억 6,500만원 중 95억 4,800만원을 집행하고, 17억 3,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8억 8,300만원을 불용하였음.

11) 재외동포협력센터 인력 운영 현황

(단위: 명, 2024. 1월 기준)

구분	임원	일반직						무기 계약직	별도 정원	합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정원	2	1	4	8	10	11	-	-	1	37
현원	2	-	7	7	10	18	2	-	1	47*

* 「재외동포기본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의 재외동포재단 소속 직원을 정원 내에서 고용을 승계하되, 재외동포재단 해산으로 직원의 수가 센터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초과하면 그 초과 현원이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재외동포협력센터 지출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증 감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C)	불용액 (D=A-B-C)	집행율 (E=(B+C)/A)
1. 인건비	3,181	-	3,181	2,631	530	20	99.4
2. 경상운영비	1,649	-	1,649	987	116	546	66.9
3. 사업비	8,335	-	8,335	5,930	1,088	1,317	84.2
계	13,165	-	13,165	9,548	1,734	1,883	85.7

< 재외동포협력센터 사업비 등 세출결산 총괄표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결산	2022결산	2023년			2024예산
			예산(A)	결산(B)	B/A	
총 계	-	-	13,165	11,282	85.7	23,754
5000 인건비	-	-	3,181	3,161	99.4	3,710
5001 인건비	-	-	3,181	3,161	99.4	3,710
인건비(5001-501)	-	-	3,181	3,161	99.4	3,710
6000 경상운영비	-	-	1,649	1,103	66.9	1,169
6001 경상운영비	-	-	1,649	1,103	66.9	1,169
경상운영비(6001-601)	-	-	1,649	1,103	66.9	1,169
7000 사업비	-	-	8,335	7,018	84.2	18,875
7001 통합네트워크 지원	-	-	1,182	1,020	86.3	2,001
통합네트워크 지원(7001-701)	-	-	1,182	1,020	86.3	2,001
7002 기록전시운영	-	-	351	235	67.0	315
기록전시운영(7002-702)	-	-	351	235	67.0	315
7003 동포지원사업	-	-	922	898	97.4	3,580
동포지원사업(7003-703)	-	-	922	898	97.4	3,580
7004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	-	(8,456)*	(647)	(7.7)	(7,809)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7004-704)	-	-	(8,456)	(647)	(7.7)	(7,809)
7005 민족교육 육성	-	-	691	634	91.8	339
민족교육 육성(7005-705)	-	-	691	634	91.8	339
7006 재외동포 장학사업	-	-	2,492	1,744	70.0	4,620
재외동포 장학사업(7006-706)	-	-	2,492	1,744	70.0	4,620
7007 차세대육성사업	-	-	2,697	2,486	92.2	8,020
차세대육성사업(7007-707)	-	-	2,697	2,486	92.2	8,020

* 2023년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고 재이월액임.

라. 검토의견

1) 기록전시운영

「기록전시운영」은 재외동포 역사·문화기록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재외동포 아카이브 구축 및 재외동포 관련 전문자료 축적 및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임.

< 기록전시운영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2024 예산액
		추경·전용	내역조정					
기록전시운영	351	-	-	351	159	76	116	315
▪재외동포 아카이브 구축사업	248	-	-	248	148	76	24	250
▪자료실 운영	103	-	-	103	11	-	92	65

동 사업의 예산현액 3억 5,100만원 중 7,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억 1,600만원이 불용되고 1억 5,900만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45.3%임. 주요 불용발생사유는 재외동포청 설립 및 재외동포재단 해산으로 인한 자료실을 미운영에 따른 예산임.

□ 재외동포 아카이브 시스템 조속 구축 및 외부기관과 연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외동포기록물 관리 필요

재외동포 아카이브 구축사업은 재외동포 관련 기록 보존(생활·문화·역사) 및 관리체계 구축, 전 세계 재외동포가 이용 가능한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 제공, 기록 콘텐츠 서비스(문화전시 포함)를 활성화하는 사업임.

재외동포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추진계획은 2020년 5월 수립되어 기획재정부 국민참여예산으로 2021년 유관기관과의 MOU 체결, 실무추진단 구성 등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ISP 용역에 따라 2022년부터 재외동포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했음.

그러나 재외동포협력센터는 2022년 기록물 수집 및 중장기 수집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을 통하여 동포사회 사진 자료, 연구서, 간행물 등 903점을 수집하였고 국내 동포 기록물 등 수집사례를 조사하여 중장기 기록물 수집전략을 마련하였으며, 2023년에는 파독 근로자, 고려인동포,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 등 25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1세대 재외동포 구술채록 용역을 시행하였고¹²⁾ 2024년에도 쿠바·멕시코 등 중남미 지역 아카이브 자료를 생성할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직원 대상 내부기록물 수집을 시행하여 2023년 말 기준으로 168,306건의 디지털 기록물 및 사진, 시안, 행정 박물¹³⁾ 등을 수집하였으나, 내부자료로서 보관하는데 그쳐 동 사업의 궁극적 목적인 대국민 및 전 세계 재외동포가 이용가능한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 못하고 있음.

디지털 아카이브 플랫폼 구축은 재외동포와 내국민을 대상으로 재외동포 분야 학술연구 기반조성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내국민의 재외동포 이해증

12)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수집자료를 유관기관에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13)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 활용한 형상기록물

진 및 재외동포의 민족정체성 함양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므로 재외동포 자료 수집과 동시에 아카이브 서비스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구) 재외동포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던 한상넷, 코리안넷, 스테디코리안 등 3개 시스템이 재외동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동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연구자료, 아카이브 자료, 행사 정보 등을 새롭게 구축될 재외동포 디지털 아카이브와 연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한국이민사박물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외부기관의 학술, 연구, 전시자료 등 상호 데이터와 연계하여 재외동포 기록물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존·관리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여 향후 명실공히 재외동포 전문자료실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자료실 미운영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자료실 운영사업은 도서, 논문 학술자료 등 재외동포 관련자료를 전문적으로 수집·축적함으로써 재외동포 학술연구 기반을 조성하여 온·오프라인으로 재외동포 및 내국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임.

2023년 예산액은 1억 300만원으로 1,100만원을 집행하고 9,200만원을 불용하였는데, 주된 불용사유는 재외동포청 설립 및 재외동포재단 해산으로 인한 자료실을 운영하지 않음에 따른 것임.

< 자료실 운영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2024 예산액
		추경·전용	내역조정					
■자료실 운영	103	-	-	103	11	-	92	65

* 2023년 예산액은 재외동포협력센터 출범 이후 재외동포청으로 부터 이관 받은 예산임.

자료실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음. 온라인의 경우 재외동포재단 발간 자료 및 초청장학생 논문 등 원문자료, 자료실 소장자료, 다른 기관의 소장 재외동포 관련 자료 검색기능, 재외동포 관련 통계자료 등을 제공¹⁴⁾하고 있으며, 오프라인은 전문자료의 망실방지를 위하여

14) <연도별 자료실 온라인 이용자 현황>

연도	해당 기간	온라인 이용자(회)	
		총계	일 평균
2019	2019.01.01. ~ 2019.12.31.	406,582	약 1,114
2020	2020.01.01. ~ 2020.12.31.	262,813	약 720
2021	2021.01.01. ~ 2021.12.31.	222,664	약 610
2022	2022.01.01. ~ 2022.12.31.	363,819	약 996
2023	2023.01.01. ~ 2023.05.31.	172,313	약 1,188

제한적으로 대출하고 있음.

2023년 상반기 자료실 운영은 자료실 도서관리프로그램을 통한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¹⁵⁾하고 있었으며, 월별 재외동포 및 사업관련 도서를 구입¹⁶⁾하여 재외동포 및 내국민을 위한 서비스가 원활히 운영 중에 있었음.

그러나 재외동포재단이 해산되며 재외동포재단의 모든 권한 및 의무가 재외동포청으로 승계됨에 따라 도서 및 도서 관련 물품 등 각종 자료의 보유관리권한도 재외동포청으로 승계되었고 동 권한은 2024년 3월 15일이 되어서야 재외동포협력센터로 이관되었음¹⁷⁾.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협력센터에게 자료의 보유관리권한을 이관하지 않고 2023년도 자료실 운영 예산액을 교부함에 따라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자료실 운영 주체 미확정 상태에서 자료구입비 등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였고 재단 해산으로 인해 서울로 청사를 이전¹⁸⁾함에 따라 자료 보관 및 열람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지 못하여 자료실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측면도 있음. 현재 자료실 소장자료 33,492종 45,981권은 경기도 연천군 전문시설에 보관 중임.

재외동포청이 자료 보유관리권한의 이관을 지연함에 따라 재외동포협력센터는 2023년 당초 예산액¹⁹⁾의 절반 수준인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4

15) (주)라이브텍을 통하여 자료실 도서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 시행(2023. 1월 - 5월 말)

16) 59종 86권의 도서 구입

17) 재외동포청 운영지원과 - 2079(2024. 3. 15)

18) 국립외교원 외교타운에 임시청사 마련

19) 2023년 자료실운영을 위한 당초 예산액은 1억 2,000만원임.

년에도 자료실 운영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할 것으로 보임.

재외동포청 및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자료실 운영 권한에 대한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아 자료실 운영이 미흡하였으므로 2024년 자료실 운영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재외동포재단 자료실 기사용 면적>			
구 분	재외동포재단(2018년도까지)	재외동포재단(2018~2023)	
위 치	서울, 외교타운	제주, 서귀포제2청사	
사용면적	전용 190.17㎡ (약 57.53평)	전용 297.1㎡ (약 89.87평)	
장 서 량	27,991종 31,090권 (2018. 12. 30. 기준)	33,492종 45,981권 (2023. 6. 1. 기준)	

<재외동포협력센터 자료실 면적 산출(안)>			
구 분	소분류	소요면적	산출내역
재외동포 자료실	대외개방 서고 및 열람공간	297.1㎡ (약 89.87평)	재외동포재단 자료실 면적과 동일 기준 적용(보유도서량 동일)
	비공개 기록물 서고*	113㎡ (약 34.18평)	1만권 기준
	근무공간**	14㎡ (약 4.2평)	7㎡/인
필요면적 합계		424.1㎡ (약 128.3평)	

또한 재외동포협력센터는 공간 부족으로 자료실의 오프라인 서비스가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데, 현재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상주하고 있는 국립외교원의 하부층이 공실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외교부 및 국립외교원과 협의하여 조속히 오프라인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축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건축」은 차세대동포 정체성 함양 및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거점 역할 수행을 위한 재외동포 관련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재외동포와 내국인 간 상호이해·존중 바탕의 사회통합 및 한인 역량 결집을 위한 전시, 아카이브, 교육·연수, 조사연구 등 복합 기능을 수행할 계획임.

< 2023년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축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2024 예산액
		추경·전용	내역조정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	-	-	8,456	647	7,809	-	-
▪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건축	-	-	-	8,456	647	7,809	-	-

이 사업은 2021년 및 2022년에 편성된 설계비 및 건축비 총 84억 5,600만 원을 전액 이월하였고 2023년 예산액은 편성하지 않아 예산현액은 84억 5,600만원이며, 6억 4,700만 원을 집행하고 78억 900만 원을 다시 이월하였음. 주요 이월액 발생사유는 재외동포재단 해산, 재외동포청 및 재외동포협력센터 신설로 업무이관에 따른 일정 지연으로 인한 것임.

□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 지연에 따른 건립규모 축소의 재정당국과의 예산액 재논의 필요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는 당초 2023년 건립완공을 목표로 하였으나, 마곡지구의 매입불가 통보로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를 대상지로 재선정하여 사

업을 추진하면서 완공일을 2025년으로 사업기간을 2년 연장하였고,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공사비 증가로 인한 건립규모도 7,800㎡에서 1,042㎡가 감소한 6,758㎡으로 축소되었음.

< 2021년 당초 계획 및 2023년 계획 변경 비교 >

구분		당초(2021)	현재(2024)
건립대상지		마곡지구 2021. 6. 16. 마곡지구 매입불가 통보 ↓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총 사업비		29,974 백만원	좌동
사업 기간		2021~2023	2021~2025
규모	연면적	7,800㎡	6,758㎡
	층수	지하 2층, 지상 7층	지하 1층, 지상 5층
	비고	마곡지구 대상 계획(2020. 10.)	서울대 시흥캠퍼스 대상 계획 재수립(2022. 5.)

2023년 1월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내 설계완료 및 공사발주를 계획하였으며, 2025년 10월 공사준공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 주요 계획안 >

일자별	주요 계획
2022. 12. 27.	설계공모안 심사 및 당선작 선정
2023. 1.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계약체결
2023. 9.	설계완료 및 인허가
2023. 10.	공사발주
2023. 11.	공사착수(공사기간: 24개월)
2025. 10.	공사준공

자료: 재외동포재단 기부금 운용 및 관리계획(안), 2022. 12. 29일

그러나 재외동포청 및 재외동포협력센터 설립, 교통영향평가, 서울대 캠퍼스위원회 심의의견 반영 등을 위하여 설계용역이 일시 중단되어 당초 계획보다 3년이 지연된 2026년 하반기가 되어야 건립이 완료될 것으로 보임.

< 2023년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 관련 계약체결 현황 >

(단위: 백만원)

계약명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계약일	계약기간	변경사유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	주식회사 신한종합건축사 사무소	1,052	'23.1.9.	(당초) '23.1.25.~'23. 9.21 (변경) '23.1.25.~'24. 4.29 *	사업이관 행정 소요기간 등 반영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 교통영향평가 용역	주식회사 이원알앤디	45	'23.5.15 .	'23. 6. 1. ~ '24. 3.26.	-

* 동 계약은 현재 일시정지 상태로, 용역 재개 시 조달청 및 설계사 측과의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 변경 예정

2020년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잦은 계획변경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며 건립이 공사기간 내에 완공되지 못함에 따라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발생한 공사비 인상으로 당초 예산액에 맞추어 건립규모를 축소하였음.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은 재외동포의 염원으로 기부금 조성²⁰⁾을 통하여 사업이 추진되었음. 2023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재외동포청이 신설되었으며,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으로 향후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 간 교류 증진 및 재외동포를 위한 각종 정책이 확대될 것으로 예견되므로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의 기능적 역할이 증가될 것으로 보임.

20)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자금 등으로 18억원이 접수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예산 부족으로 인한 건립규모 축소는 향후 재외 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상시적 교육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한인네트워크로서의 거점 역할, 해외이주 역사유물 전시관 운영 등 필요한 목적 및 역할을 추진하기에 역부족이 발생할 수 있음.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재외동포청 설립 및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등 상황변경을 고려하여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가 당초 목적인 바와 같이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건립규모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Ⅲ. 재외동포청 통합 재무결산 분석

1. 총 괄

국가재정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와 재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도입을 근간으로 한 「국가회계법」이 제정(2007. 9)되고, 결산보고서의 체계적 정비 등을 위한 개정 「국가회계법」(2008. 12)이 시행되고 있는 바,

각 중앙관서 및 기금관리주체는 2009회계연도부터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모든 기금에 대하여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토록 하고 있으며 재무제표의 국회제출이 2011회계연도 결산부터 의무화되었음.

이하에서는 재외동포청 일반회계에 대한 통합재무제표를 분석하고자 함.

2. 재정상태표²¹⁾ 분석

(단위: 백만원, %)

구 분	회 계	2023(A)	조직개편일(B)	증 감(A-B)	
				금 액	비 율
자 산	일반회계	7,988	-	7,988	-
부 채	일반회계	103	-	103	-
순자산	일반회계	7,885	-	7,885	-

21) 재정상태표는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의 명세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됨.(「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가. 자 산²²⁾

2023년도 재외동포청 일반회계 자산은 79억 8,800만원이며, 주요 요인은 조직개편에 따른 자산의 취득으로 인해 유·무형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나. 부 채²³⁾

2023년도 재외동포청 일반회계 부채는 1억 300만원이며, 주요 요인은 미지급금의 증가에 따른 유동부채의 증가와 공무원 채용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인 장기충당부채 발생에 따른 것이다.

다. 순자산²⁴⁾(=자산-부채)

2023년도 재외동포청 일반회계 순자산은 78억 8,500만원으로 재정운영결과, 재원의 조달 및 이전에 따른 것이다.

22)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국가회계실체가 소유(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통제하고 있는 자원으로, 미래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말하며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및 기타 비유동성자산으로 구분됨(「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23)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를 말하며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및 기타 비유동부채등으로 구분됨(「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24)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며,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 조정으로 구분함.

3. 재정운영표²⁵⁾ 분석

(단위: 백만원, %)

구 분	회 계	2023(A)	조직개편일(B)	증 감(A-B)	
				금 액	비 율
I. 프로그램순원가	일반회계	24,523	-	24,523	
II. 관리운영비	일반회계	13,825	-	13,825	
III. 비배분비용	일반회계	-	-	-	
IV. 비배분수익	일반회계	0.4	-	0.4	
V. 재정운영순원가 (I + II + III - IV)	일반회계	38,348	-	38,348	
VI. 비교환수익 등	일반회계	-	-	-	
VII. 재정운영 결과(V - VI)	일반회계	38,348	-	38,348	

가. 프로그램순원가

프로그램순원가²⁶⁾는 각 개별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제적 자원의 소모액을 의미하며 정부회계에서는 프로그램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한 자원 소요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재외동포청 프로그램순원가 산출단위는 총 2개의 프로그램임.

2023년도 재외동포청 일반회계 프로그램순원가는 245억 2,300만원이며, 이는 주로 재외동포 지원 프로그램이 증가한 데 따른 것임.

25)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 또는 사업의 원가와 재정운영에 따른 원가의 회수명세 등을 포함한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임(「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26) 프로그램순원가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한 원가합계에서 다른 프로그램으로부터 배부받은 원가를 더하고, 다른 프로그램에 배부한 원가는 빼며, 프로그램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등을 빼서 표시함(「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제2항).

나. 관리운영비

관리운영비는 정부행정기관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행정경비로, 인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각종 수수료, 제세공과금, 교육훈련비, 여비, 업무추진비, 용역비, 연구개발비 등이 이에 해당함.

2023년도 재외동포청 일반회계 관리운영비는 138억 2,500만원으로 인건비 및 운영경비 발생에 따른 것임.

다. 비배분비용

비배분비용은 국가의 자산 매각 시 발생하는 자산처분 손실과 같이 투입한 비용 중 프로그램과 직접적·간접적인 대응관계가 없거나, 프로그램에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비용을 의미함.

2023년도 재외동포청 일반회계 비배분비용은 발생하지 않았음.

라. 비배분수익

비배분수익은 자산처분이익, 평가이익 등 프로그램과 관련 없이 발생하거나 프로그램 외의 업무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의미함.

2023년도 재외동포청 일반회계 비배분수익은 40만원임.

마. 비교환수익 등

비교환수익 등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국세, 부담금, 기부금, 무상이전 및 제재금 등의 수익을 의미함.

2023년도 재외동포청 일반회계 비교환수익 등은 발생하지 않았음.

바. 재정운영 결과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순원가²⁷⁾에서 비교환수익 등을 뺀 것을 의미함.

2023년도 재외동포청 일반회계 재정운영결과는 383억 4,800만원임.

27) 재정운영순원가는 프로그램순원가에서 관리운영비 및 비배분비용은 더하고 비배분수익은 뺀 액수를 의미함.

4. 순자산변동표²⁸⁾ 분석

(단위 : 백만원, %)

구 분	회 계	2023(A)	조직개편일(B)	증 감 (A-B)	
				금 액	비 율
I. 기초순자산	일반회계	-	-	-	
II. 재정운영 결과	일반회계	38,348	-	38,348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일반회계	46,234	-	46,234	
IV. 조정항목	일반회계	-	-	-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일반회계	7,885	-	7,885	

가. 기초순자산

기초순자산은 전기(前期)에 이미 보고된 순자산 금액임. 2023년도 재외 동포청 일반회계 기초순자산은 발생하지 않았음.

나. 재정운영 결과

재정운영 결과는 재정운영표에서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이나 사업의 원가에서 재정운영에 대한 원가회수를 차감하여 산출하는 지표로 앞의 재정 운영표에서 증감요인을 설명하였음.

다. 재원의 조달 및 이전

2023년도 재외동포청 일반회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462억 3,400만원이며, 이는 국고수입의 증가 등에 따른 것임.

²⁸⁾ 순자산 변동표는 회계연도 동안 순자산의 변동명세를 표시하는 재무제표임.

라. 조정항목

조정항목은 납입자본의 증감, 투자증권평가손익, 파생상품평가손익 및 기타 순자산의 증감 등을 포함하는 개념임.

2023년도 재외동포청 일반회계 조정항목은 발생하지 않았음.

마. 기말순자산

기말순자산은 기초순자산에서 재정운영 결과를 빼고 재원의 조달 및 이전과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산출하는 개념임.

2023년도 재외동포청 일반회계 기말순자산은 78억 8,500만원임.

IV. 재외동포청 성과관리 분석

1. 총괄

「성과관리제도」란 기존의 투입·통제 중심의 방식을 벗어나 성과관리를 통해 획득된 성과정보를 바탕으로 정부 업무 수행의 책임성을 제고하며, 예산의 편성·심의·집행·결산의 전 과정을 성과위주로 운용하는 제도를 의미함.

「국가재정법」 제8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로 하여금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제6호에서는 성과관리란 “정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정리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즉, 성과관리란 각 기관이 그 임무달성을 위해 전략적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업무를 추진한 후, 조직의 역량과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개선이나 자원배분, 개인의 성과보상에 반영함으로써 조직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

현재 정부는 기획재정부의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작성 지침에 근거하여 매년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바, 각 정부기관은 성과계획서에 그간의 정책

성과, 해당연도의 정책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해당 기관의 조직, 인원 등 일반현황과 재정현황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성과목표체계에 따라 임무, 비전, 전략목표, 성과목표를 논리적인 흐름에 맞게 순차적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성과목표와 관리과제에 해당하는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따라 성과보고서는 성과계획서에 제시된 임무, 비전,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그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는 성과계획서와 동일하게 작성하여 성과지표에 대한 실적 및 성과 달성률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목표달성 기여도와 목표달성 과정 및 성과미달성 원인분석과 향후 성과이행 방안 등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음.

2. 성과체계 현황

재외동포청의 임무는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의 공동발전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과 인류의 공동번영에 기여한다.”이며, 비전은 “자랑스런 700만 재외동포를 보호·지원하는 재외동포의 든든한 울타리이며 재외동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재외동포사회의 대변자”임. 재외동포청이 '23.6월에 신설됨에 따라 재외동포청의 '23년 성과체계는 외교부 성과체계 내 프로그램 목표 IV-3을 달성하기 위한 4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재외동포청의 성과목표 및 과제 현황 >

구분	전략 목표	프로그램 목표	단위사업			
			소 계	일반재정	정보화	R&D
개수(개)	-	1	4	4	-	-
비율(%)	-	-	100	100	-	-

재외동포청 설립(2023. 6. 5.) 이전 외교부의 프로그램 목표 IV-3에 해당하는 2023회계연도 예산은 589억 4,600만원임. 이 중 성과관리 대상 예산은 584억 4,900만원이며, 결산액 기준으로는 330억 8,300만원임.²⁹⁾

29) 재외동포청 설립(2023. 6. 5.) 이후 청 소관 예산은 총 561억 3,300만원임. 이 중 성과관리 대상 예산은 376억 3,500만원이며, 결산액 기준으로는 303억 6,300만원임.

< 재외동포청 소관 관리과제 재정운용 현황 >

(단위: 억원)

구 분		2022년		2023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총 액(A+B)		-	-	584	331
단위사업 설정	일반재정	-	-	584	331
	정보화	-	-	-	-
	R&D	-	-	-	-
	소계(A)	-	-	584	331
단위사업 미설정	인건비	-	-	-	-
	기본경비	-	-	-	-
	사무환경 조성	-	-	-	-
	소계(B)	-	-	-	-

외교부 2023년도 결산의 재원목표별 재원배분 현황을 보면, 재외동포청 소관의 “프로그램 목표 IV-3 : 해외 체류 우리 국민의 영사서비스 접근성을 지속 제고하고 재외동포의 정체성 및 역량을 강화한다.”가 속해 있는 “전략목표 4 :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대외 활동을 지원한다”에 전체 재원의 8.2%인 1,229억원을 투입하였음.

< 외교부 전략목표별 재원배분 현황 >

(단위: 억원, %)

구 분	결산액	비중
□ 전략목표 1 : 한반도 평화·번영 및 동북아 안정·협력에 기여한다.	220	1.5
□ 전략목표 2 : 상생 공영의 지역별 맞춤형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우리의 외교 지평을 확대한다.	161	1.1
□ 전략목표 3 : 국제무대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확대한다	13,056	87.5
□ 전략목표 4 :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대외활동을 지원한다.	1,229	8.2
□ 전략목표 5 :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외교를 적극 추진한다.	147	1.0
□ 전략목표 6 :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외교역량을 제고한다.	115	0.8

< 외교부 2023년 성과목표관리체계도 >



3. 2023회계연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재외동포청의 2023회계연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를 보면, 1개의 프로그램 목표에 총 2개의 성과지표가 설정되어 있음. 2개 성과지표 중 2개 성과지표 모두 달성(100~130%) 하였음.

< 재외동포청 2023년 주요 재정사업 성과 >

(단위: 개)

프로그램 목표	프로그램 목표의 성과 지표수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1	2	-	2	-
	100%	-	100%	-

< 성과지표별 달성 현황 >

성과지표	목표 대비 달성률	
1.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실적	목표 / 실적	51,218건 / 52,438건
	달성률(%)	102.4
2. 한민족 정체성 함양 지수	목표 / 실적	88.1점 / 88.1점
	달성률(%)	100.0

V.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배정액은 「재외동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금 등을 위한 ‘재외동포 지원’과 재외동포청 출범(‘23.6.5.)에 따른 인건비, 기본경비, 사무환경 조성 등 ‘재외동포 행정지원’을 위한 총 219억 9,700만원의 일반예비비로, 이 중 70.6%인 155억 3,400만원이 집행되고, 15억 6,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48억 9,800만원이 불용되었음.

< 예비비 지출내역 >

(단위: 백만원)

사항	프로그램명	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지 출 내 역
일반 예비비	재외동포 지원	4,752	4,661	-	91	- 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 - 재외동포와의 상생발전 기반구축
	재외동포 행정지원	17,245	10,873	1,565	4,807	- 인건비 - 기본경비 - 사무환경 조성 -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 구축(정보화) -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합 계		21,997	15,534	1,565	4,898	

가. 재외동포와의 상생발전 기반구축

재외동포와의 상생발전 기반구축은 재외동포정책 평가를 통해 개선점을 발굴하고 정책에 대한 전문가 자문, 국민여론, 동포사회 분위기 등을 조사·수렴하여 성공적인 정책 수립 및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1억 2,3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3,200만 원을 집행하고 9,100만 원을 불용하였음.

< 예비비 편성 대비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배정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 고
재외동포와의 상생발전 기반구축	123	32	-	91	
합 계	123	32	-	91	

□ 예비비 편성의 적정성 검토 부족

재외동포청 개청에 따라 재외동포 관련 세미나 및 간담회 등 재외동포정책 수립 및 사업착수 과정에 수반되는 정책대상 및 전문가 의견 청취, 관계자 업무 협의, 대외 아웃리치 등을 위하여 예비비를 배정받았음.

2023년 예산 편성 당시 재외동포청의 출범은 예상하지 못하였고 독립기관 단위의 신규정책 관련 예산소요를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은 타당함. 그러나 ‘재외동포와의 상생발전 기반구축’ 사업이 재외동포청 출범에 따른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전문가 자문, 국민여론, 동포사회 분위기 등을 파악하고 재외동포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예산이므로 재외동포청 출

법에 따른 재외동포 관련 세미나 및 간담회 등을 위하여 별도로 예비비를 배정받을 것이 아니라, 사업 내 조정을 통한 기정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한지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었음.

예비비로 집행한 내역을 살펴보면,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 개최, 재외동포담당관회의 개최,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설명회, 기본계획 설명자료 제작 등 다수의 사업이 기정예산과 예비비를 중복적으로 집행하고 있음.

< 예비비 세부 집행내역 >

세부사업명	예산
재외동포와의 상생발전 기반구축	[예비비] 32백만원 * (일반수용비) 원폭피해동포 초청 관련 번역·사할린 영주귀국 법률자문 11백만원, 기타 정책업무 관련 소모품·회의용품 등 9백만원 * (임차료)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 5백만원 * (국외업무여비) 사할린 영주귀국 설명회 출장 3백만원 * (사업추진비) 재외동포담당관회의,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 4백만원

재외동포청은 예비비를 배정받은 후 예상하지 못한 해외 정치일정으로 인하여 국외 업무수행이 제한되었고 일반예산으로 편성된 동일 비목의 예산 여유분을 우선 집행하여 단가 절감 노력 등에 의하여 예비비의 불용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기정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을 예비비로 배정받은 것으로 보임.

향후 재외동포청은 예비비의 사용계획시 기정예산으로 충당가능한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었음.

나. 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재외동포의 한인으로서 정체성 함양 및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 등 46억 2,9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36억 1,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억 4,600만원은 이월하고 5억 6,600만원은 불용하였음.

< 예비비 편성 대비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배정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 고
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	4,629	3,618	646	566	
- 인건비	2,980	2,631	530	20	
- 경상운영비	1,649	987	116	546	

□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미준수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외교부에서 이체된 기정예산 2억 100만원 및 예비비 배정액 29억 8,000만원을 포함한 총 31억 8,100만원을 인건비로 편성하였고 이 중 26억 3,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억 3,000만원을 이월하였음. 주요 이월내역은 명예퇴직수당 2억 9,200만원, 조기퇴직수당 7,200만원, 경영평가성과급 1억 4,700만원 등임.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재외동포기본법」 부칙 제4조에 따라 해산된 재외동포재단 소속 직원을 정원 내에서 고용 승계하되 재외동포재단 해산으로

직원의 수가 센터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초과하면 그 초과 현원을 정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4년 1월 기준 재외동포협력센터의 현원은 정원보다 10명이 많은 47명임.

< 재외동포협력센터 인력 운영 현황(2024. 1월 기준) >

(단위: 명)

구분	임원	일반직						무기계약직	별도정원	합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정원	2	1	4	8	10	11	-	-	1	37
현원	2	-	7	7	10	18	2	-	1	47*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정원 초과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퇴직금규정」 부칙 제3조(한시적 조기퇴직금 지급기준 적용특례)를 신설하였고³⁰⁾ 2024년 12월 20일 이전에 조기퇴직을 신청할 경우 기본연봉월액의 12개월분을 조기퇴직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인건비 이월 내역 >

(단위: 백만원)

비목	세부 내역	이월액	이월사유
보수 (110-01)	명예퇴직 수당	292	· '24년에도 추가 수요조사 실시하여 명예퇴직 시행 예정
	조기퇴직 수당	72	· '24년에도 추가 수요조사 실시하여 조기퇴직 시행 예정
	'23년 경영평가 성과급	147	· 외교부 산하기관 평가위원회가 2024년 1월 개최되어 사고 이월
고용부담금 (320-09)	4대보험료(12월분)	19	· 센터 임직원 12월분 보험료 등
합계		530	

30) 2023. 6. 5. 「퇴직금규정」을 제정하면서 특례규정을 신설함.

재외동포협력센터는 2024년에 조기퇴직 및 명예퇴직 희망자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고³¹⁾ 이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인건비 3억 6,400만원을 이월하였음.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인건비 이월은 명예퇴직·조기퇴직 수당 이월집행계획에 따른 것이고 2023회계연도에 퇴직희망자가 확정되지 않았고 추가 수요조사를 통하여 퇴직예정자를 확정할 계획이므로 지출원인행위 없는 사고이월에 해당하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³²⁾을 준수하지 않은 것임.

재외동포협력센터는 명예퇴직·조기퇴직 시행시 2024년도 인건비가 부족할 것으로 보고 인건비를 이월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퇴직수당 지급에 대한 특례규정이 재외동포협력센터 설립일인 6월 5일이 제정되었음을 고려할 때 2024년 예산안 편성시 퇴직수당에 필요한 재원을 편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부족한 재원은 지급하지 않은 여유재원의 이·전용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었음.

31) 2023. 10월 명예·조기 퇴직 시행으로 1명 퇴직 처리, 퇴직희망자 추가 모집을 통한 감원 필요

32)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VI.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검토의견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재외동포청은 주의 2건, 제도개선 2건의 시정요구를 받은 바 있으며, 시정요구 총 4건에 대해 조치완료 되었음을 국회에 보고하였음.

<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

조치 결과	구분				소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징계	
조치완료	-	2건	2건	-	4건
조치 중	-	-	-	-	-
소 계	-	2건	2건	-	4건

< 2022 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미흡 >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1.31)
(1) 동일한 사유로 불용, 이·전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	○ [지적사항] 코로나, 남북관계 단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사유로 많은 사업 예산들이 불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 일부 사유는 정세·현황 분석으로 충분히 예상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예산 편성 시점부터 불용 가능성을 고려해야 했을 것임 ○ [시정요구사항] 재외동포청은 향후 예산 편성시 대상 국가의 사업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동일한 사유로 예산이 불용, 이·전용되지 않도록 할 것	제도개선	○ 기관 신설(‘23.6.5.) 이후 인력 충원이 지연됨으로써 사업추진 여건이 불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재국 상황 및 사업여건을 충실히 고려한 사업추진 및 정기적인 예산집행 점검·환류 등으로 사업예산의 불용 최소화 노력 경주 * 사업예산 집행률 : 90.1% ○ ‘24년 예산 편성 시 대상 국가의 상황 및 사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부 예산안 마련(‘23.8월) 및 국회 확정(‘23.12.21.) ○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21일	조치완료
(2) 재외동포청이 고려인동포 권익신장지원사업을 직접 추진 필요	○ [지적사항] 고려인 권익 신장사업 중 무국적 고려인의 법률지원사업, 고려인동포 피난민 긴급 구호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은 재외공관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외교부에서 출연한 공공기관 예산을 다시 재외공관에 보조금으로 교부하여 집행하는 것은 「예산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것임 ○ [시정요구사항] 재외동포청은 고려인동포 권익 신장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직접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	주의	○ 재외동포청 출범 후 고려인동포 권익신장 사업 예산을 舊 재외동포재단의 사업 출연금에서 재외동포청 직접 수행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 추진 ○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2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1.31)
(3) 동포단체 지원규모 하향, 내역사업 통합 등 예산 집행률 제고 방안 강구	○ [지적사항] 2022년 계기성 기념사업 지원 예산액은 2억원 중 1,800만원이 집행되어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9.0%로 부진함 ○ 계기성 기념사업은 동포단체의 지원규모가 전체 사업비 대비 50% 이내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한인회 등 동포단체는 동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시정요구사항] 재외동포청은 저조한 집행률을 기록하는 계기성 기념사업의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동포단체의 지원 규모를 축소하거나, ‘교류증진 및 권익신장 지원’과 통합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안을 강고할 것	제도개선	○ 계기성 기념사업의 집행률 향상을 위해 ‘24년도 예산 편성에 계기성 기념사업을 동포단체 활성화의 내역사업과 통합하여 정부안 수립 및 국회 확정(‘23.12.21.) ○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21일	조치완료
(4) 예산 조정을 통한 신규 사업 추진 지양	○ [지적사항] ‘재외동포재단 TV 사업’은 2021년 TF를 구성하여 시범적으로 시행한 사업으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홍보사업 내 ‘언론홍보(SNS 홍보 등 포함) 및 홍보물 제작비’로 집행하였음 ○ 2022년 예산 편성시 기획재정부에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함 ○ [시정요구사항] 재외동포청은 국회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향후 동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할 것	주의	○ 재외동포청 출범 후 예산 조정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정((‘23.11.16.) 및 예산집행 점검 회의(6회) 시행 등 국회 확정 예산을 목적에 부합하는 집행을 위한 점검 체계 확립 ○ 조치완료일 : ‘23년 11월 16일	조치완료

